

# 대구예술대학교 평생교육원 운영 규정

(개정 2010.08.02. 교무위원회)

(개정 2011.04.20. 교무위원회)

(개정 2019.06.26. 법인이사회)

## 제 1 장 총칙

**제1조 (명칭)** 본원은 대구예술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(이하 “본원”)이라 칭한다.

**제2조 (설립목적)** 본원은 대학이 교육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적극 봉사함으로써 교육의 기회평등과 평생교육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여 국가와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**제3조 (위치)** 본원은 경북 칠곡군 가산면 다부리 산117-6번지 대구예술대학교 내에 둔다. 다만, 필요에 따라 대구.경북 일원으로 한다.

## 제 2 장 조직

**제4조 (원장)** ① 본원은 원장을 두며 원장은 우리 대학교 교직원으로 임명할 수 있으며 외부인사를 임용할 경우 총장이 이사회에 임용제청하고,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이사장이 임용한다. (개정 2019.06.26.)

② 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한다.

**제5조 (교직원)** ① 본원에 필요한 교직원을 두고 원장의 명을 받아 교학업무를 관장한다.

② 본원에는 강의전담교원을 둘 수 있다.③ 교원의 자격, 임용에 관하여는 「평생교육원 강의전담교원 임용규정」으로 정한다.④ 교원은 원장이 수강기수 단위로 임용하되 총장의 결재를 득하고 임용한다.

## 제 3 장 운영위원회

**제6조 (구성)** ① 본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원장을 포함하여 총장이 위촉하는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.

**제7조 (임기)**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 다만,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**제8조 (기능)**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교육사업계획에 관한 사항
2.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3. 설치과정 및 교과목에 관한 사항
4. 강의전담교원 임용에 관한 사항

5. 학습인원 및 학습비에 관한 사항
6.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
7. 학점은행에 관한 사항
8. 기타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

**제9조 (의결)** 위원회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
## 제 4 장 설치과정 및 학사운영

**제10조 (학습기간)** 본원의 학습기간은 각 과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학습자는 수시로 모집한다.

**제11조 (학습일수)** 본원의 주 학습일수는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.

**제12조 (지원자격)** 본원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은 일반성인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, 특수한 과정 또는 교과목에 대하여는 학력·연령 등을 제한할 수 있다.

**제13조 (선발방법)** 본원의 학습자는 선착순으로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설치 과정상의 수준을 감안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면접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.

**제14조 (설치과정 등)** ① 본원의 설치과정 및 학습인원은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.

② 제1항의 교육과정과 학습인원 및 제15조의 학습비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과 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③ 본원에는 다음 각호의 과정을 둔다

1. 일반과정(교양 및 취미교육, 전문가교육, 직업준비, 위탁교육)
2. “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”에 의한 학점은행제
3. 기타 평생교육에 필요한 과정

**제14조의 2 (학점은행제 운영)** 학점은행제 운영에 관하여 관련 법규와 본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.

**제15조 (학습비)** ① 본원에서 학습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학습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
② 학습비의 반환은 평생교육법시행령 제23조 제2항을 준용한다.

**제16조 (수료 및 수료증 교부)** ① 본원의 수료자는 소정의 설치과정의 교과목을 70%이상 이수한 자로 수료증(별지 제1호 서식, 별지 제2호 서식)을 교부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수료자에게 자격전형을 거친 후 자격인정서(별지 제3호 서식)를 수여한다.

## 제 5 장 학습자활동 및 포상

**제17조 (자치회)** ① 학풍을 진작하고 학습자 상호간의 화합과 단결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각 과정마다 자치회를 구성할 수 있다.

② 자치회는 각 과정마다 회장과 총무 각 1인을 둔다.

**제18조 (학습자 활동의 금지)** 학습자는 본원 학습기간 동안 정치활동을 할 수 없으며, 집단행동·농성 등 학습에 지장을 주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.

**제19조 (포상)** 학습 태도와 품행이 방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학습자에게는 수료시 포상할 수 있다.

## 제 6 장 회계

**제20조 (회계년도)** 본원 회계년도는 대구예술대학교 회계년도에 따른다.

**제21조 (예산편성)** ① 원장은 매년 12월 중 다음해 예산운영 계획서를 작성하여 위원회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② 본원의 학습비 등의 수입은 교비회계에 포함하여 관리한다.

**제22조 (수입원)** 본원 운영경비는 다음과 같은 수입으로 충당한다.

1. 학습비
2. 대구예술대학교 보조금
3. 위탁훈련 지원금(위탁훈련시)
4. 기타 수입

**제23조 (회계집행)** 본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제반사항은 본원에서 관장한다.

## 제 7 장 보칙

**제24조 (시행세칙)** 이 규정에 정하지 않는 사항 및 시행세칙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원장이 정한다.

**제25조 (준용규정)** 이 규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대구예술대학교의 제규정을 준용한다.

### 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0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0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1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 서식]

제 호

# 수료증

성명 :

생년월일 :

교육기간 :

위 사람은 대구예술대학교 평생교육원에  
서 실시한 ( )을 수료하였으  
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.

년 월 일

대구예술대학교 평생교육원장

[별지 제2호 서식]

제 호

# 수료증

성명 :

생년월일 :

사람은 우리 대학교 평생교육원( )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함.

년 월 일

대구예술대학교 평생교육원장 (학위명 성명)

위의 증명에 의하여 이 증서를 수여함.

년 월 일

대구예술대학교 총장 ( 학위명 성명 )

[별지 제3호 서식]

격 종 목 :  
자 격 증 번 호 :  
시 험 합 격 일 :  
성 명 :  
:  
교 육 기 관 : 대구예술대학교 평생교육원

위 사람에게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하  
여 ( ) 자격을 인정하고 이  
증서를 수여함.

년 월 일

대구예술대학교 총장